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,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
3.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·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

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6조제2항제2호 중 “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”를 “해당 건설공사”로, “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”을 “위험성 감소방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7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7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42조제1항”을 “법 제43조제1항”으로, 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”을 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
3.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·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공사규모,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</u> 2. (생략) 3. <u>공사 시 유해·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</u>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</u>	제86조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,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·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</u> ②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 건설공사</u> -----

<u>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</u>	----- ----- <u>위험성 감소방안</u>
3. <u>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</u>	<u><삭 제></u>
4. <u>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</u>	<u><삭 제>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<u>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</u>	<u><삭 제></u>
③ <u>법 제67제1항제3호</u>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<u>법 제67조제1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.
1. <u>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</u>	1. <u>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 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</u>
2. <u>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</u>	2. <u>법 제43조제1항</u>----- <u>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</u> -----
3. <u>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</u>	3. <u>주요 건설공사용 기계·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--------------	---